

한국어교육원 분원 운영 규정

제 정 2007. 9.
개 정 2011.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에서 정한 한국어교육원 분원(이하 “분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분원의 명칭은 “우송 ○○(대학명 또는 지명) 한국어교육원 분원”이라 한다. 단, 협약대학교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사업) 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본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교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분원장 및 강사) ① 분원에 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분원장은 분원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총괄한다.

② 본교 한국어교육원 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원의 사업을 위한 책임강사를 학교의 장에게 임용 제청하여 파견 할 수 있다.

③ 분원장 또는 책임강사로 파견되는 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원장 또는 책임강사로 파견되는 자의 신분은 학교의 장이 임시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인력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① 분원장 또는 책임교수는 분원의 운영비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분원장 또는 책임교수를 임시전도 자금의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그 경비를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은 학교의 재정규칙에 따라 현금출납부 및 관련증빙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대상) 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1. 양교의 협약에 따라 개설되는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자
2. 본교 학부과정에 신·편입학을 원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3. 장기 또는 단기의 한국어 집중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
4. 기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제7조 (교육시설) ① 분원의 교육시설은 현지 협약대학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 기자재 및 교육원 운영 비품의 구비 등에 관하여는 본교와 현지 협약대학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제 규정 및 분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